

TaxFlash



국가별 보고서(CbCR)의 신규 규정

인도네시아는 G20 국가로서 OECD CEPS Action 13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규 이전가격 문서화 형식인 Master file(통합기업보고서), Local file(개별기업보고서) 및 Country-by-Country Report(CbCR, 국가별 보고서)를 도입하였다. 동 사항은 재무부 규정 No.213/PMK.03/2016 (PMK-213)에 규정되어 있다. PMK-213과 관련한 사항은 TaxFlash No.01/2017을 참고하길 바란다.

DGT(인도네시아 국세청)는 2017년 12월 29일자로 DGT 규정 No.PER-29/PJ/2017(PER-29)를 발표하였으며, 동 규정은 CbCR에 대하여 국내 보고체계 및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룹회사는 소득의 국가별 배분, 경제 활동, 국가별 세금납부 현황 등과 관련한 필수 정보를 공통 양식에 따라서 관련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CbCR은 모회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그룹회사의 자회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모회사는 CbCR을 작성, 유지 및 제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룹회사를 대신하여 해당 과세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CbCR은 다국적기업(MNE)이 소재하는 관할세무당국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매년 교환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1월 26일자로 CbCR의 교환과 관련하여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였다.

PMK-213은 CbCR은 일반적으로 모회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회사가 소재한 국가 또는 세무당국이 인도네시아가 CbCR을 입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다국적기업의 인도네시아 자회사가 CbCR을 반드시 DGT에 제출하여야 한다.

모회사의 범위

PER-29는 모회사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회사가 반드시 CbCR을 작성, 유지 및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a. 인도네시아 모회사의 경우 그룹 내 자회사와 직접 및 간접적인 지배구조가 있는 경우, 해외소재 모회사의 경우 그룹 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 b. 세무상 소재국가의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요구되는 경우
- c. 그룹내 타종속회사로 부터 직접 및 간접적으로 소유되지 아니하나, 기타 법인으로 부터 직접 및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에 기타 법인이 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는 경우
- d.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당해연도 매출금액이 하기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1) 인도네시아 모회사의 경우 : IDR 11 trillion
 - 2) 해외 모회사의 경우:
 - 모회사의 소재국가가 CbCR의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에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출금액이 € 750 million 이상인 경우;
 - 모회사의 소재국가에서 정한 매출금액 기준 이상인 경우

연결 매출액 금액이 IDR 11 trillion이상인 인도네시아 자회사를 포함하여 그룹내에 다수의 구성회사가 상기의 매출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룹은 CbCR을 작성하여야 할 회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범위

PER-29는 인도네시아 자회사에 대하여 하기와 같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 a. 그룹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이 되며 다국적 그룹회사의 별도의 사업 유닛에 해당하는 경우
- b. 회사의 크기 및 중요성으로 인하여 다국적 그룹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사업유닛에 해당하는 경우
- c. (a)와 (b)를 포함한 다국적 그룹회사의 별도의 사업유닛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고정사업장이 규정, 세무신고 및 경영진의 지배 목적으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CbCR의 제출의무

인도네시아가 특정사유로 인하여 CbCR을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자회사는 반드시 CbCR을 DGT에 제출하여야 한다. 모회사의 소재국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도네시아는 CbCR을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 a. CbCR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

- b. 인도네시아와 정보교환협정(EOI, Exchange of Information)이 없는 경우;
- c. 인도네시아와 정보교환협정(EOI)이 있지만, 인도네시아가 자동 정보 교환을 통하여 CbCR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

인도네시아가 해당국가과 국제협약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CbCR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조세당국간 협약(QCAA, Qualifying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 (b)항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PER-29는 상기 (c) 항과 관련하여 정보교환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모회사의 소재국으로부터 CbCR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a. QCAA에서 협의한 사항 이외의 자동 정보교환협정 시행의 지연;
- b. CbCR의 자동정보교환 시스템의 오류

DGT는 인도네시아와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된 국가 중 정보교환협정에 따라 CbCR을 입수할 수 없는 국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자회사의 모회사 소재국가가 해당 리스크에 포함된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자회사는 반드시 CbCR을 DGT 공시이후 3개월안에 CbCR을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제출기한내에 CbCR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DGT가 이를 요청할 예정이다.

모회사가 권한을 위임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외모회사가 다국적 기업그룹을 대신하여 CbCR의 제출을 목적으로 별도의 해외자회사를 모회사의 대리법인(Surrogate Parent Entity)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자회사는 하기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CbCR의 제출의무가 없다:

- a. 인도네시아 자회사가 모회사의 대리법인의 정보를 DGT에 제출하는 경우;
- b. 모회사의 대리법인이 세무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국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1) CbCR의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 2) 인도네시아와 QCAA가 체결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 해당 국가로부터 CbCR을 입수할 수 있는 경우.

인도네시아 모회사의 경우 CbCR의 작성의무를 타국가의 법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보고의무

CbCR은 세무연도말까지 이용가능한 데이터와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이 되어야 하며, 세무연도 종료후 12개월 안에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

PER-29는 법인세 신고와 별도로 Notification양식의 신고 또는 CbCR(해당하는 경우)의 신고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인도네시아 자회사 또는 법인은 CbCR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신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Notification을 DGT에 제출하여야 한다. Notification의 표준양식은 PER-29에 포함되어 있다.

납세자가 CbCR의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CbCR을 Notification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로 인도네시아 모회사의 경우에는 CbCR을 PMK-2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으로 반드시 전자형식(XML 파일)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Notification과 CbCR은 반드시 DJP 온라인 또는 수기로 세무서에 제출이 되어야 하며, 하기의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a. 2016년 세무연도의 경우, 세무연도 종료 후 16개월 이내 (12월말 법인의 경우 2018년 4월말까지);
- b. 2017년 세무연도를 포함하여 그 이후 부터는 세무연도 종료후 12개월 이내에 제출.

납세자는 Notification과 CbCR의 제출을 하는 경우 제출확인증을 받게 될 것이다. 제출확인증은 익년도 CITR에 첨부되어야 하며, 이는 CbCR이 제출되었다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제출이후에 CbCR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DGT에 보고하여야 한다.

DGT 공고

DGT는 인도네시아와 하기의 협약이 있는 국가 또는 사법관할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 a. 국제협약(International Agreements);
- b. 조세당국간 협약(QCAA);
- c. QCAA가 체결되었지만, 자동정보교환 매커니즘을 통하여 인도네시아가 CbCR을 입수할 수 없는 국가.

동 공고는 DGT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될 것이며, 매년 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Korean Business Desk Contact

정태훈 회계사 (taehun.jung@id.pwc.com)

박승찬 회계사 (park.seungchan@id.pwc.com)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id.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id.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id.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id.pwc.com

Ali Widodo

ali.widodo@id.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id.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id.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id.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id.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id.pwc.com

Dany Karim

dany.karim@id.pwc.com

Deny Unardi

deny.unardi@id.pwc.com

Engeline Siagian

engeline.siagian@id.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id.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id.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id.pwc.com

Hanna Nggelan

hanna.nggelan@id.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id.pwc.com

Hendra Lie

hendra.lie@id.pwc.com

Hisni Jesica

hisni.jesica@id.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id.pwc.com

Laksmi Djuwita

laksmi.djuwita@id.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id.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id.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id.pwc.com

Mohamad Hendriana

mohamad.hendriana@id.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id.pwc.com

Parluhutan Simbolon

parluhutan.simbolon@id.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id.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id.pwc.com

Runi Tusita

runi.tusita@id.pwc.com

Ryosuke R Seto

ryosuke.r.seto@id.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id.pwc.com

Soeryo Adjie

soeryo.adjie@id.pwc.com

Sujadi Lee

sujadi.lee@id.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id.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id.pwc.com

Tim Watson

tim.robert.watson@id.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id.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id.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id.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id.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id.pwc.com

www.pwc.com/id



[PwC Indonesia](https://www.linkedin.com/company/pwc-indonesia)



[@PwC Indonesia](https://twitter.com/Pw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contact.us@id.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8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